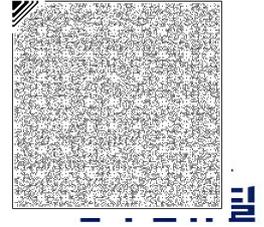
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의약품 품목갱신 관련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[올로파타딘염산염 단일제(0.1% 점안제)]

1. 관련 : 의약품관리과-5282호(2021.7.8.) 및 의약품관리과-6046호(2021.8.5.)
2. "올로파타딘염산염 단일제(0.1% 점안제)"의 품목허가(신고) 갱신과 관련하여 허가사항 변경(안)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.
3. 이에, 「약사법」 제31조제12항, 제42조, 제76조제1항 및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(총리령)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, 붙임과 같이 "올로파타딘염산염 단일제(0.1% 점안제)"에 대한 용법용량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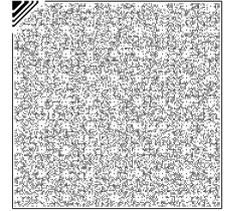
○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: 2021.9.19.

4. 아울러 관련 단체(협회) 등에서는 동 내용을 주지하시는 한편,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등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, 의약품 사전·사후 관련 기관(부서) 등에서는 향후 의약품 품목허가(신고) 등 민원서류의 검토 및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등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동 변경명령 사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(<https://nedrug.mfds.go.kr>)의 상단메뉴 '고시/공고/알림' → 의약품 허가·승인 → 변경명령'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붙임 1. 허가사항 변경명령 내용

2. 품목 및 업체 현황. 끝.

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수신자 허가총괄담당관, 의약품정책과장, 의약품안전평가과장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(순환신경계약품과장)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(종양항생약품과장)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(약효동등성과장),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,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,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,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,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,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,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, 대한약사회장, 대한의사협회장,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,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,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, 한국병원약사회장

심사관 **김내래** 주무관 **김정현** 사무관 **이겨레** 의약품관리과 전결 2021. 8. 19. 장 **김남수**

협조자

시행 의약품관리과-6320 (2021. 8. 19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677 팩스번호 043-719-2650 / naraekim1019@mail.go.kr / 대한민국 공개

힘내라 대한민국!